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20년 4월 14일
- 나. 제출자: 김현희 의원 외 6명
- 다. 회부일자: 2020년 4월 2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4. 24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김현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 및 적응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기후변화에 대한 저극적인 대응 및 적응 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
- 2)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구온난화, 기후변화, 온실가스, 온실가스 배출, 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대한 정의 (안 제2조)
- 3)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의 기본이념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4)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~제6조)
- 5) 기본계획 수립,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~제8조)
- 6)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- 7)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)
- 8) 민간 거버넌스 활동 지원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9)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기금의 설치·운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12조)
- 10)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

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

나. 합 의: 녹색환경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.) 결과: 의견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·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,
- 이번 조례안에서 제4조 구청장의 책무로 정부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시책에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5조, 제6조에서 사업자·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, 제7조, 제8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음
-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생략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붙임 관계법령 1부.

**□ 환경정책기본법**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,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.

**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**

**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·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,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,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**

**제5조(자치구의 책무)** ① 자치구는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.

② 자치구는 기후변화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기후변화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